

부산지방법원 2022. 1. 11 선고 2020가단341715 판결 [계약금반환 청구의 건]

재판경과

부산지방법원 2022. 12. 15 선고 2022나42204 판결

부산지방법원 2022. 1. 11 선고 2020가단341715 판결

전문

원 고 주식회사 A

피 고 주식회사 B

변론종결 2021. 12. 14.

판결선고 2022. 1. 11.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5. 30.부터 2020. 10. 14.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 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원고가 2020. 5. 10. 구두로 피고와 사이에 방호복 제조에 필요한 부직포 원단을 2020. 5. 29.까지 공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물품공급계약(이하 ‘이 사건 공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20. 5. 18. 피고에게 그 계약금으로 40,000,000원을 지급한 사실, 피고가 위 납품기일까지 원고로부터 주문받은 부직포 원단을 공급하지 못한 사실은 당사지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된다. 또한 이 사건 지급명령의 송달로써 이 사건 공급계약에 따른 계약금의 반환을 구하는 원고의 의사표시에는 피고의 위와 같은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이 사건 공급계약을 해제한다는 의사표시가 포함되어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공급계약은 이 사건 지급명령이 피고에게 송달되었음이 기록상 명백한 2020. 10. 14. 적법하게 해제되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이득으로 이 사건 공급계약에 따라 지급된 계약금 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그 받은 날 이후인 2020. 5. 30.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 송달일인 2020. 10. 14.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와 구두로 이 사건 공급계약을 체결한 후 부직포 원단을 중국에서 수입하여 공급하는 과정에서 중국 현지에 있는 업체 측의 사정으로 출항이 늦어져 2020. 6. 1.에서야 부직포 원단이 대한민국에 도착하였고, 이에 대하여 사전에 원고에게 고지하여 양해를 받았으며, 원고의 요구로 부직포 원단을 경주시 C로 운송하였으나 원고가 별다른 이유 없이 인수를 거절하여 현재까지 보세창고에 보관 중이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동건